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4나95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4나95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8 선고 2022가단532941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다숙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낙일

변론 종결 2024. 9. 3.

판결 선고 2024. 10. 2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8. 선고 2022가단5329419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9.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접수 제305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25. 같은 등기소 접수 제55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5면 제13행의 "상태엔" 부분을 "상태인"으로, 제6면 제6행의 "기술보증기금" 부분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각 고치고, 제6면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의 "㉔" 부분을 "피고는 C에게 2021. 9. 17. 8,000,000원, 2021. 9. 28. 27,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매매일자(2022. 2. 16.)에 피고가 C에게 28,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다음 날 C이 피고에게 위 돈을 다시 송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위 대여금을 제2 내지 5부동산의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하여 이를 매수하였고, 다만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와 같이 28,000,000원을 주고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으로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한바, 이 법원에서의 주장 및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나머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복규

판사오연정

판사안승호

별지